다문화가족 실태

정 지 윤* · 강 경 식*

Ⅰ. 서 론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전통적 형태의 정상적인 가족에서 이색가족이 10여 년 새 급증해 가족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가구가 크게 늘어 국제결혼이 지난해 3만8천491건으로 전체 결혼 가운데 약 10%를 차지했다. 농촌 총각의 3분의1 이상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발표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한국 국민과 결혼한 남녀 외국인 배우자) 현황을 보면, 이들의 출신국가가 124개국에 이르며, 우리나라가 이미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006년 NFL슈퍼볼 최우수 선수상을 거머쥔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는 우리 사회에 혼혈인에 대한 관심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의 등장으로 일부 연예인을 통해 보여져왔던 혼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폭발하였고,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연일 혼혈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그의 한국 방문 이후, 폭발적이었던 대중들의 관심은 한 풀 꺾였지만 이제는 이성적으로 혼혈인을 포함해 국제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등으로 구성 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여러 가족의 형태 중 다문화가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2.1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9]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다. 더불어 소위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2 다문화가정의 현황

2.2.1 국제결혼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이며, 그 가운데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한다. 이는 곧 2005년에 결혼한 한국인 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편, 한국남자와 결혼한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이었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다.

<표2.1> 국적별 순위와 통계수치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여성국적	2003.	2004	증감률	**남성국적**	2003	2004	증감(률)
	계	19,214	25,594	6,380(33.2)	계	6,444	9,853	3,409(52.9)
1	**중국**	13,373	18,527	5,154(38.5)	**중국**	1,199	3,621	2,422(202.)
2	**베트남**	1,403	2,462	1,059(75.5)	**일본**	2,613	3,378	765(29.3)
3	**일본**	1,242	1,224	-18(-1.4)	**미국**	1,237	1,348	111(9.0)
4	필리핀	944	964	20(2.1)	캐나다	223	230	7(3.1)
5	몽골	318	504	186(58.5)	방글라	158	186	28(17.7)
6	미국	323	344	21(6.5)	호주	108	136	28(25.9)
7	태국	346	326	-20(-5.8)	영국	88	120	32(36.4)
8	러시아	297	318	21(7.1)	독일	93	110	17(17.3)
9	우즈벡	329	247	-82(-24.9)	파키스탄	130	103	-27(-20.8)
10	기타	639	678	39(6.1)	기타	595	621	26(4.4)

자료 : 통계청(2005)

* 위의 통계에는 이주민 가족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2.2.2 혼혈인

2003년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군 관련 혼혈인의 수는 400~500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펄벅재단 측은 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지촌의 여성이 외국여성으로 대체되면서 외국 여성의 2세 혼혈인이 있는데 이들 여성의 대분은 필리핀 여성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농촌 총각 등 국내 결혼이 어려운 계층의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혼혈 아동이 급증하였다. 2005년도 총 결혼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고, 농림 어업 종사자(남성)의 경우 35.9%가 국제결혼을 하였다. 농어업 종사자 세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것이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즉 국제결혼이민자 자녀(혼혈아동)은 30,727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국내에만 3만 5천여 명 정도의 혼혈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펄벅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계 혼혈인이 5천여 명, 아시아계 혼혈인이 3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2.2.3 이주노동자 자녀

이주노동자 2세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시눈 노출을 우려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숫자 파악에 곤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15세 이하 불법체류자 중 (6,438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국적자를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2,500여명이라고 한다.

2.3 다문화가족의 현실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사회.문화적 고립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또는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과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환경과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급증이 다문화가족의 현실이다.

2.3.1 언어의사소통의 문제

가족 및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베트남,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과 같은 나라의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언어 장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아이들이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머니들은 힘겨워 하게 된다.

2.3.2 가정폭력문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의 차이, 혹은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콜중독증 등으로 인하여 가정 폭력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1] 교수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제결혼을 한 농어업종사자 945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

1) 설동훈, 국내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복지 실태, 2006.

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었다.

2.3.3 사회적응의 곤란

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남편의 무관심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편, 혼혈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된다.

2.3.4 신분상의 불안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험의 자격요건은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이혼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가출하였을 경우 남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해놓은 사례도 접수되어 국적취득 전까지 발생 문제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

2.3.5 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다.

또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히 언어습득을 하기 전, 각종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과도 관계망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4 다문화가족 복지현황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많은 이민자로 구성된 선진국들은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다문화주의 또는 동화정책 둘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 호주, 미국, 스웨덴 등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2.5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2.5.1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다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5.2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원

1)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다문화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사회내의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노동권적 문제, 사회권적 문제, 시민권적 문제, 인권적인 문제에 걸친 상담의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고부간 문제를 비롯해서 폭력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 이러한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수요자의 확보는 측면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법적제도 개선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적인 갭 인정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이주국과의 교류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은 유형은 이주여성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며 이주남성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다. 여기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주요한 인력수출국임으로 이에 맞는 방안, 즉 이들 정부와의 교류와 함께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

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짐에 따라 갈수록 이주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기획서 초초안과 초안에서 밝혔듯이 학교 내에 부속기구로 '국제교류협력회'를 두어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5.3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

1) 보육시설의 확충

다문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하여 모든 유형에서 제기되는 필요를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14세 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교육 수요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오히려 유아와 아동의 높은 수요가 예측됨으로 이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포함)의 설치가 필요하다.

2)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 또는 이주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역할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나 실업의 상태에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정기교과를 맡기에는 현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일정한 프로그램, 가령 자국 문화소개나 학모회모임, 언어 교육 영역,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하루 보육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구체적-체계적 시스템 마련

학교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성설적인 한글공부방, 상담/지원 체제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결합하고 초등학교 수준(1~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8학년(7~13세) 규모의 교육시설의 갖춘 것이 필요하며 교육은 정규교사와 자원 활동가, 다문화가족 부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2.6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소외와 빈곤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보장으로 빈곤의 예방과 탈피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의 완화라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과 질병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50%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23.6%가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그 이유 중 몰라서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동체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와 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러한 정신과적 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폭넓은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과 얼굴 모양이 다른 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내국인 자녀들이 받는 이른바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니, 이는 어린 나이부터 학교에서 이들 역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임을 명확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도 이에 대한 자녀 교육문제의 대안으로 차별의 시정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거나 한국인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 곤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이들의 자녀 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가족 내에는 출생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지원방식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정비하여야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미흡하면 체계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제결혼 가정, 혼혈인,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에 의한 대중들의 일회성 관심일 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

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의 특정 부처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짜임새 있는 정책 결정 능력이 요구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는 열린 자세로 대할 때 다문화 가정은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본다.

Ⅳ. 참 고 문 헌

[1] 심진섭(2010), “다문화가정 상담의 이해”, 사)한국심리상담협회.
[2]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2. 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0.
[3] 박천응목사(2008), “국제결혼 이혼가정문제 대책방안”, 안산이주민센터.
[4] 김선아(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가족부
[5] 설동훈(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6]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7]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8]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9]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센터 어울림 www.eulim.org
[10]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11] 펄벅재단 http://www.pearlsbuck.or.kr